
'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5. 6.

환 경 부
교 통 환 경 과

재·개정 이력

[illegible]

목 차

1. 개	요		1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4
3.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8
4.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12
5. 시범사업, 유지관리비 지급, 생계형 차량 기준 등			20
6. 보급물량, 신규인증 장치(엔진 포함) 관리			23
7. 저감장치 탈거			25
8. 사후관리 및 보고			27

1. 개 요

가. 목 적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저공해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

나. 근 거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81조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조금 지급 규정”이라 한다)
-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증 규정”이라 한다)
-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이라 한다)
- ☐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차량의 관리 지침」(이하 “보증기간 경과 장치 규정”이라 한다)
- ☐ 「유지관리비용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지침」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요소수 비용 지급에 관한 지침」(이하 “유지관리비용 지침”이라 한다)

다. '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액 및 물량

- ☐ 사 업 비(국비) : 263,335백만원
-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평택시 70%), 지방비 50%]

< '25년도 시·도별 예산현황 >

(단위: 천원, 대)

구분	총계		조기폐차		DPF 부착		PM-NOx 저감장치 부착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소계	263,335,000	163,720	216,070,400	156,484	4,826,250	2,925	375,000	50	810,000	108
서울 특별시	17,289,055	9,227	14,503,155	9,021	75,900	46	-	-	75,000	10
부산 광역시	14,956,945	11,676	13,372,145	11,221	539,550	327	-	-	52,500	7
대구 광역시	5,672,350	3,860	4,635,600	3,606	264,000	160	-	-	-	-
인천 광역시	13,011,595	6,303	10,891,395	6,135	54,450	33	-	-	97,500	13
광주 광역시	8,769,365	5,106	7,858,915	4,979	103,950	63	22,500	3	22,500	3
대전 광역시	5,373,105	3,363	5,089,805	3,283	102,300	62	-	-	-	-
울산 광역시	5,832,050	3,412	4,715,750	3,187	275,550	167	-	-	-	-
세종특별 자치시	1,726,045	1,037	1,284,045	984	33,000	20	-	-	-	-
경기도	50,915,185	29,276	45,385,435	28,520	396,000	240	157,500	21	127,500	17
강원특별 자치도	12,721,775	8,496	10,106,925	8,133	206,250	125	-	-	90,000	12
충청 북도	12,184,070	6,527	9,308,470	6,221	122,100	74	-	-	22,500	3
충청 남도	19,900,610	12,622	15,777,960	12,066	150,150	91	15,000	2	120,000	16
전북특별 자치도	15,551,180	8,899	11,328,230	8,353	186,450	113	22,500	3	52,500	7
전라 남도	19,675,280	12,322	14,466,680	11,461	518,100	314	-	-	-	-
경상 북도	28,190,295	18,997	21,443,045	17,821	783,750	475	-	-	67,500	9
경상 남도	28,319,150	20,174	23,127,150	19,104	990,000	600	157,500	21	75,000	10
제주특별 자치도	3,246,945	2,423	2,775,695	2,389	24,750	15	-	-	7,500	1

구분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무공해건설기계		무공해건설현장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국비	물량
소계	137,500	25	29,700,000	3,600	8,645,000	455	2,320,000	70	450,000	3
서울 특별시	-	-	330,000	40	1,900,000	100	255,000	9	150,000	1
부산 광역시	11,000	2	981,750	119	-	-	-	-	-	-
대구 광역시	5,500	1	767,250	93	-	-	-	-	-	-
인천 광역시	5,500	1	420,750	51	1,197,000	63	195,000	6	150,000	1
광주 광역시	-	-	247,500	30	494,000	26	20,000	2	-	-
대전 광역시	5,500	1	115,500	14	-	-	60,000	3	-	-
울산 광역시	-	-	420,750	51	-	-	420,000	7	-	-
세종특별자치시	-	-	165,000	20	209,000	11	35,000	2	-	-
경기도	5,500	1	3,341,250	405	1,197,000	63	155,000	8	150,000	1
강원특별자치도	-	-	1,509,750	183	798,000	42	10,000	1	-	-
충청북도	11,000	2	1,452,000	176	798,000	42	470,000	9	-	-
충청남도	11,000	2	3,547,500	430	209,000	11	70,000	4	-	-
전북특별자치도	-	-	3,118,500	378	798,000	42	45,000	3	-	-
전라남도	5,500	1	4,455,000	540	-	-	230,000	6	-	-
경상북도	44,000	8	5,478,000	664	304,000	16	70,000	4	-	-
경상남도	33,000	6	3,283,500	398	608,000	32	45,000	3	-	-
제주특별자치도	-	-	66,000	8	133,000	7	240,000	3	-	-

※ (운행차 저공해조치) DPF 및 PM-NOx 저감장치 부착, 전동화 개조(1톤 화물차)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DPF, 엔진교체, 전동화 개조(지게차),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라. '25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 사 업 비(국비) : 3,405백만원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평택시 70%), 지방비 50%]

< '25년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국비지원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국 비	구 분	국 비
계	3,405,000	경기도	1,244,019
서울특별시	785,241	강원특별자치도	34,650
부산광역시	129,071	충청북도	30,518
대구광역시	68,495	충청남도	57,819
인천광역시	784,700	전북특별자치도	65,721
광주광역시	15,221	전라남도	31,414
대전광역시	38,665	경상북도	32,071
울산광역시	58,187	경상남도	26,996
세종특별자치시	1,002	제주특별자치도	1,210

※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경과장치 클리닝, 반납운송비, 재사용장치 클리닝, 반납탈거비, 요소수(PM-NOx) 주입비, 창고 임대 및 관리비(클리닝 안내(전자고지 포함) 소요경비 등) 지원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나. 보조금 교부조건

- ☐ (교부 조건) 환경부장관은 지역에서 운행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되, 집행실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교부결정을 할 수 있음
- ☐ (지방비 보조) 지자체는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시 국고 보조금에 해당하는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지침 내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50% 다만, 평택시는 70% 국비 지원 (미군이전평택지원법)
-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 권역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별첨 8), 보조금법 및 동지침, 보조금지급규정, 인증규정, 성능유지 확인검사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 준수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25년 보조금 지침상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에 한함
- ☐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는 교부받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현황 및 부착대상 차량 현황, 차량의 연식, 부착제한 차종 등을 확인하여 지원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는 '25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대상 경유차 및 건설기계 현황,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보조금 지급 제한)** 지자체는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 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예산내승인을 제한 하여야 함(체납현황 기준일은 예산내승인일 까지만 적용)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거나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에 따른 운행제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운행 제한 포함)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처분 유예 중인 차량은 적용하지 않음
- **(절차 준수 및 시스템 의무 사용)** 지자체와 장치제작사(저공해엔진 교체 사업자 포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지자체는 '25년 보조사업 계획 수립 후 즉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예산, 물량), 추경 및 재배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세부사항을 시스템에서도 수정해야 함

라.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는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환경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스템으로 신청 (제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함

환경청	지자체	환경청	지자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원주	강원도, 충북(충주시 등 5개 시.군)
낙동강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	대구, 경북
금강	대전, 충남, 세종, 충북(청주시 등 6개 시.군)	전북	전북
영산강	광주, 제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여 백"	

- 광역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작성 시 시·군별 예산 계획을 첨부하여 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여야 함
 - 관할환경청장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5일 이내에 교부
 - 관할환경청장은 지자체가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와 관할환경청장은 '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지자체는 보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즉시 관할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관할환경청장에게 반납
-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보조금법 제31조)

마. 보조금 집행대상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대상차량
-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필요한 아래 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이하 “차량”이라 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우선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 (1순위) 생계형,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4순위) 기타
- (배출가스저감장치 사업종료)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자체는 공고문 등에 사업 종료 사전 안내 필요

*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제외

3. 보조사업 지원금액 및 조건 등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
-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대상차량의 배기량이 대형장치와 중형장치가 겹치는 경우 중형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1,000cc 초과하거나, 정격출력이 240PS를 초과할 경우 대형장치 적용 가능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 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나.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사업참여 및 지원금액

- (사업대상) PM-NOx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건설기계 DPF, 전동화 개조 사업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차량 선정

구 분	부착·교체·개조대상									
PM-NOx 저감장치	◇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차량('08년식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자동차 전동화 개조	◇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자동차 모델을 대상으로 하며(세부 가능모델 기준은 별도 통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안전성 확인 성적서를 받은 차명 및 형식									
건설기계 DPF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믹서 및 펌프는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전동화 개조	◇ 건설기계 엔진교체(또는 개조) 대상은 Tier-1 이하(엔진교체) 이며, 전동화 개조 대상은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을 대상으로 함(세부 가능모델 기준은 별도 통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Tier-1 이하</th></tr> </thead> <tbody> <tr> <td>130kW 이상</td><td>'04년 까지 제작</td></tr> <tr> <td>75kW 이상 130kW 미만</td><td>'05년 까지 제작</td></tr> <tr> <td>19kW 이상 75kW 미만</td><td rowspan="2">'06년 까지 제작</td></tr> <tr> <td>19kW 미만</td></tr> </tbody> </table>	구분	Tier-1 이하	130kW 이상	'04년 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	'05년 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06년 까지 제작	19kW 미만
구분	Tier-1 이하									
130kW 이상	'04년 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	'05년 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06년 까지 제작									
19kW 미만										

- (사업참여) 아래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 규정에 따른 인증 및 보증이 완료된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심각한 민원 및 사후관리 부실 사례 등이 지속적인 경우 사업자 선정 해지 가능

○ 노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등 대국민 공모에 따른 사업

- 대국민 공모에 따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참여 하며, 적합성 평가 및 유효기간 연장 등 사업기준은 「운행차(운행 건설기계 포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국민 공모 운영 지침(“이하 대국민 공모 지침”이라 한다.)」 을 따름

□ (지원금액) PM-NO_x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아래와 같음

※ 대국민 공모 지침 운영에 따른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는 해당 지침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통지한 단가로 적용

□ (전동화 보조금 성능평가) 배터리 에너지 밀도, 사후관리체계(정비업체), 안전계수 등을 고려하여 전동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 보조금은 '보조금 단가 × 배터리 효율계수 × 사후관리계수 × 안전계수'로 결정

* 전동화 보조금 성능평가는 '25.7월부터 시행

※ 보조금 성능평가는 [한국환경공단](#)이 서류접수 및 검토 후 환경부가 최종 결정 및 안내하며,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등에 공지할 계획임

< 보조금 산정 기준 >

배터리 에너지 밀도(Wh/L)	배터리 효율계수	사후관리 업체	사후관리 계수	안전관리	안전계수
500초과	1.0	7개소 이상 (권역별 1개소 이상)	1.0	제조물책임 가입	1.0
455초과~500이하	0.9	5개소 이상	0.9	제조물책임 미가입	0
410초과~455이하	0.8	3~4개소	0.8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 有	1.0
365초과~410 이하	0.7	2개소 미만	0.7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 無	0
365 이하	0.6				

** 권역은 수도권(3개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 계수 적용 기준 >

구 분	기 준
배터리 에너지 밀도	국가표준(KS C IEC 62660 - 1)에 따라 에너지 밀도를 산출하여 대국민 공모 운영 지침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밀도 산출 증빙 자료(산출식, 셀 길이 실측 사진 등)가 첨부되어야 함
사후관리 업체	본 지침에 따른 인프라 신고제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후관리 업체여야 함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이 된 사업자여야 하고, 정비업 내용에 사업 대상 기계가 포함되어야 함 2. 증빙 자료가 제출(사업자 등록증, 정비업 등록증, 계약서)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직영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함
제조물 책임보험	사업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 안전계수 1을 적용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안전계수 0을 적용(안전계수가 0인 경우 보조금 미지급)
배터리 모니터링	원격 모니터링(충방전 중 SOC, 전압, 전류, 온도, 과충전/과방전 등 각종 에러, 감지 시 사용자에게 알림 서비스(문자 등) 제공) 기능을 탑재하고 제공 시 안전계수 1을 적용하고, 미제공 시 0을 적용(안전계수가 0인 경우 보조금 미지급) 다만, 2024년까지 지정된 사업자는 '25.12.31일 이전까지 동 요건 충족을 약속하는 협약서(별첨 참조)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안전계수 1 적용 가능

○ PM·NO_x 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9,371	9,271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834	13,704	130	2,262
복합재생 대형 (출력제한)	14,958	14,828	130	2,262

1. 유지관리비용은 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대당 총액 범위 내)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 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7,101	462
중형	-	-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 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 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로더		롤러	지게차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LPG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	13,054	11,075	16,77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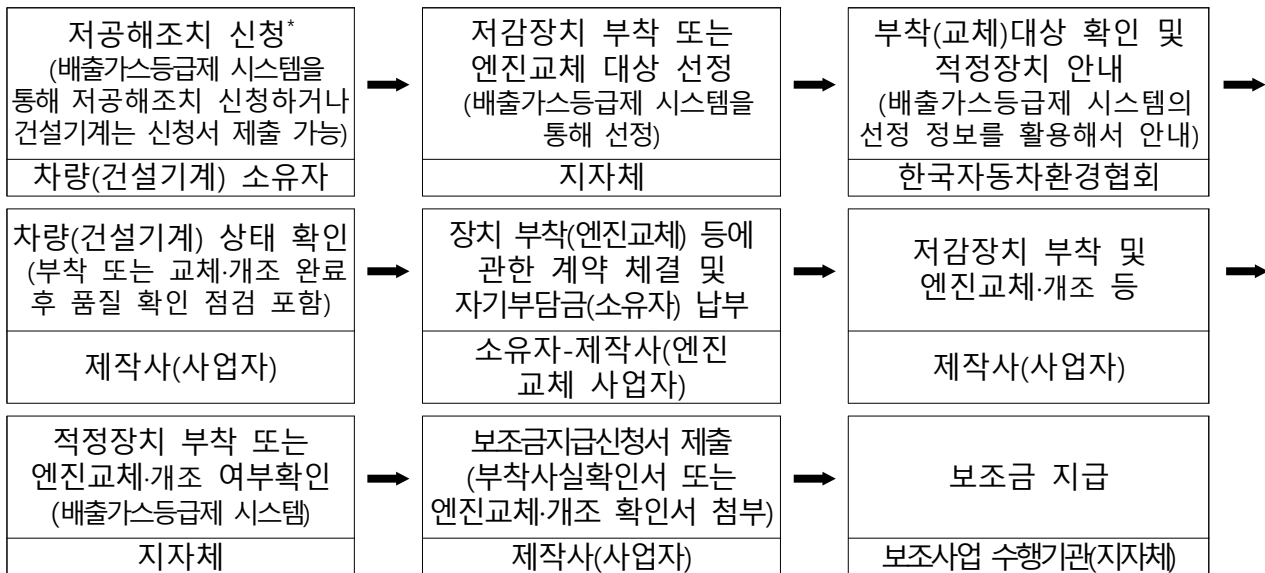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등 대국민 공모에 따른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 및 보조금	37,942	사업 실시 여부 미정 (검토중)	32,150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시범사업 대상 물량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대국민 공모에 따라 평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사업지원 금액 기준은 별도 통보 예정
4. 위 보조금은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25.6월말까지(지자체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일까지) 적용함
 5. 향후,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25년도 상반기 내)이며, '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4.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가. 사업 공고 및 저공해조치 신청 등

① (사업 공고) 지자체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배포 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속히 사업 공고(별첨 5에서 8까지 참고) 실시 하며, 사업 공고에는 아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사업 공고 내용에는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 개시 일시 및 지원 대상 선정 예정일과 접수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 지자체는 저공해조치 신청자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저공해 조치 사업별 주요제원(전동화 개조에 따른 배터리 정보 등)을 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지자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 위탁 협약을 통해 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①-① (저공해 조치 신청) 저공해 조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동의 후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환경부 시스템 신청 가능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사업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며, 지자체는 사용제한 유예 등 신청 접수에 따른 조치 절차 안내
-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절차는 이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에 따른 조치 절차(유예 조치 등)는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 지자체는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개조 대상 확인과 관련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는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관련 부착 제품별 기술적 특성을 포함한 설명을 차량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Tel 1544-0907)를 통하여 충분히 안내받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①-② (저공해조치 명령) 지자체는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권고를 실시하며, 소유자는 지자체에서 정한 저공해조치 기한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소유자가 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경유차 검사 부적합 차량 소유자 중 장치 부착 등을 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도 신청 필요
- 명령에 따른 저공해조치 기한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불가나 예산 부족 등에 따른 조치 절차(유예 조치 등)는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나. 대상차량 선정 등

② (대상차량 또는 건설기계 선정) 지자체는 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된 정보를 활용하여 차량 또는 건설기계(건설기계의 경우 시스템 또는 신청서 접수에 따른 신청 정보 이용)의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선정

- 항만·공항 입·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지자체 노후경유청소차, 매립지(수도권) 및 물류터미널 입·출입 경유화물차 등 우선 선정

- 100억이상 관급 건설사업장(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을 출입하는 노후 건설기계 우선 선정
-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차량은 조기폐차 권고
-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연식에 따른 제한 완화 가능
- 지자체는 연식, 배기량, 출력 기준에 따라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시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우선 선정·안내
 - (PM-NOx) DPF 저감장치 및 PM-NOx 저감장치 모두 적용 가능한 차량은 PM-NOx 저감장치(출력제한기능 적용모델 우선배정)로 선정·안내 하여야 함
 - 다만, 저감장치 제작사의 기술 검토 결과 PM-NOx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관할 지자체의 '25년 PM-NOx 저감장치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DPF 부착 안내
 - ※ '25년 PM-NOx 저감장치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는 관할 광역시·도를 통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관할 광역시·도는 예산확보 결과 통보)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및 엔진교체) 저감 효과가 높은 기술순*으로 우선 선정·안내하여야 함
 - * 전동기 → Stage-5(가스엔진) 또는 Tier-4 → Tier-3
 - 1) Stage-5(가스엔진)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해당 엔진으로 교체
 - 2) 엔진교체 사업자는 기술 검토 결과, Tier-4 엔진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 통보 및 지자체 승인을 통해 Tier-3 엔진 교체 안내
 - ※ 지자체는 전동화 개조 수요 확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 협약 등을 할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수요조사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음

②-① (예산내 승인 및 선정 내역 통보) 지자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원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 선정 내역 통보

- 자동차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상차량 선정 및 시스템을 통해 예산내 승인(협회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경우 협회에 대상 건설기계 선정 내역 통보(시스템 통해 통보 가능)

※ 지자체는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대상 확인과 관련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는 지자체별 연간 계획 대비 매월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선정 또는 예산내 승인을 해야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정함
- 절차에 따라 적정장치(엔진) 안내 불가, 지연, 차량(건설기계) 상태에 따른 부착(교체·개조) 불가 등의 사유로 반려된 차량은 시스템에서 예산내 승인 취소(검토 결과 변경)를 하여야 함

②-② (보조금 외 추가 비용) 일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수입차 등)에 대해 개조 또는 추가 부품의 개발·적용 등이 불가피하여 보조금 외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고 관련 증빙 자료(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등) 및 동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음

-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해 환경부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단, 차량 또는 건설기계 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에 필요한 추가 비용(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저공해조치와 관련없는 자동차, 건설기계 수리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다. 적정장치 안내 등

③ (적정장치 안내) 지자체는 협회를 통하여 부착(교체·개조)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엔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사업 공고, 우편물, 전자고지,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함

- 환경부장관은 사업 지역(시·군 등)*에 운영하는 공업사 현황 및 보급관리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제작사(사업자)의 월별 보급 물량 한도를 차등·적용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함

* 수도권 공업사는 통합하여 적용

- 협회는 타 저공해조치 불가능 또는 4등급 이상 자동차 및 Tier-2 이상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의 사유로 예산내 승인되지 않은 차량(건설기계)에 대해 전동화 개조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알릴 수 있음
- 협회는 차량(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건설기계)의 특성 및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장치(엔진) 등에 대한 안내*(문자, 전화, 전자고지 등) 실시
- * 저공해조치 신청자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저공해 조치 사업별 주요제원(전동화 개조에 따른 배터리 정보 등)등의 사항 포함

③-① (안내 내역 통보) 협회는 소유자에게 안내한 결과를 해당 제작사(사업자)에 통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가능)

- 해당 제작사(사업자)는 소유자에게 공업사 입고 일정 및 부착(교체·개조)을 위한 제반사항(필요 서류 등) 안내

③-② (사업자 변경 안내) 협회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사(사업자)로 통보된 내역을 취소하고 적정장치 안내를 다시 실시하여 다른 제작사 및 사업자로 안내

- 소유자가 다른 제작사 또는 사업자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협회에서 소유자에게 필요시 실시한 해피콜(협회에서 해당 제작사 또는 사업자에게 안내내역을 통보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공업사에 입고하는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저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 결과 소유자가 다른 제작사 또는 사업자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해당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반려를 요청한 경우(해당 제작사 또는 사업자만 부착 또는 교체·개조가 가능한 모델인 경우 미 적용)

라. 계약 체결 및 저공해조치

④ (차량 또는 건설기계 상태 및 품질 확인) 제작사(사업자 및 공업사 포함)는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적정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를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및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별지 제7호의2,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7호의5 서식)를 작성

- 상태 점검 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개조 및 전동화 개조 가능으로 선별된 차량 및 건설기계에 한하여 부착(교체·개조) 가능함
- 제작사(사업자)는 저감장치 부착 가능 또는 엔진교체·개조 가능 차량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를 제공하여 차량 또는 건설기계 내부에 부착하도록 함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개조 불가 차량은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엔진교체·개조는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에 부착(교체) 불가로 표시하여 발급
- 사업자는 공업사 입고 전 소유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 원동기 등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설문*을 통해 확인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 중 교체·개조 전 점검 항목 설문

⑤ **(계약체결)** 차량소유자는 장치 부착 계약 체결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며, 저감장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및 전동화 개조는 엔진 교체·개조 확인서(별지 제2호의2 서식)를 작성

- 계약은 소유자 및 해당 제작사(사업자) 간 전자 서명 등의 방식으로 체결 가능하고, 해당 제작사(사업자)는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납부받은 후 부착 또는 교체·개조하여야 함(자기부담금 면제 차량은 제외)

⑥ **(저공해조치)** 차량소유자는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는 경우 지자체는 저공해조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장치 부착 등의 시기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로부터 1개월 조치기한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장치제작사에 있는 경우 지자체는 기간을 정하여 장치제작사의 장치 부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소유자는 적정 장치 및 엔진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2개월 경과 시 지자체는 시스템에서 예산 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자기부담금 납부일 기준). 단, 차량소유자가 저감장치 등

부착시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시 연장기간을 정하여 접수받아야 함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당해 연도 예산소진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유예조치

⑦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개조 여부확인) 지자체는 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개조 여부 확인을 하며, 튜닝(구조변경)검사에서 파악된 장치(엔진) 내역과 제작사(사업자)에서 시스템에 등록한 장치(엔진) 내역 일치 여부 확인

⑦-① (부착 또는 교체·개조 승인) 지자체는 부착(교체·개조) 승인을 하며, 예산내 승인 차량(건설기계)과 제작사에서 시스템에 등록한 차량(건설기계) 일치 시 부착(교체·개조) 승인

⑦-② (저공해조치 차량 또는 건설기계 조치) 지자체는 저공해조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해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정밀검사 면제대상으로 명기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3년
 - 저공해 엔진개조 또는 교체 자동차는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 튜닝(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된 장치 부착·개조(엔진교체·개조)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보조금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증기간이 경과한 장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클리닝비, 반납관리비, 유지관리비 지원

*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

마. 보조금 지급 등

⑧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장치제작사 또는 사업자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시스템에서 예산내 승인(대상차량 선정)을 한 지자체로 제출, 다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별지 제2호의2 서식)
 - 지자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또는 「건설기계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별지 제3호, 3호의2)의 첨부 서류 중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 2)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및 3호의2 서식)
 - 지자체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당해 자동차의 자기부담금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별지 제3호, 3호의2)의 첨부 서류 중 자기부담금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별지 제3호, 3호의2)의 첨부 서류를 제외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법(규정)이나 지자체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환경부로 사전 통지하여야 함
- 9)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지자체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장치제작사(사업자)와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간의 저공해조치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
- 지자체는 장치제작사 또는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A/S 부실 등으로 인한 과다 민원발생(콜모니터링,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등을 분석·확인) 등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확인 사항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사실
- ◇ 보조금지급규정 별표1에 적합한 차량에 부착 여부
- ◇ 자동차 튜닝검사(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승인 및 검사 합격여부
- ◇ 저감장치 또는 엔진 보증서 발행 여부
- ◇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협회와 장치제작사(사업자)간 체결된 사후관리 이행 약정서 발행 여부
- ◇ 생계형 차량 증명 서류

- 지자체는 장치제작사(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내역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장치제작사(사업자)가 등록한 저감장치 부착현황(교체 현황) 등을 비교·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
 - 대상 차량 선정 이후 부득이하게 해당 차량이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경우, 대상 차량 선정(예산내 승인)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 (DPF 관련)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업무협조 요청(교통환경과-948, '21.8.31)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장치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이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에 차량(건설기계) 소유자(회사에 소속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 그 회사의 관리자) 및 차량(건설기계) 운행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며, 차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 받아야 함
- ※ 1) 차주가 장치제작사 또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명의로 통장에 입금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의 제출을 생략함
-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10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관련 규정, 환경부가 설정한 교부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없음
 - 또한, 보조금 수령자(대리인 포함) 등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수령자(대리인 포함)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보조금 수령자(대리인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참여 업체가 보조금 단가 산정 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환경부 및 지자체의 정정 요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자체 편성한 지방비보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5. 시범사업, 유지관리비 지급, 생계형 차량 기준 등

가. 시범사업

- (협약 추진) 지자체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동화(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새로운 기술 또는 건설기계 등 새로운 대상에 적용한 장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 비용을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관할환경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나. 유지관리비

- (청구 및 지급) 지자체는 유지관리비용을 협회의 장에게 지급하여 저공해 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유지관리에 사용되도록 함
 - ※ 성능유지확인검사 비용은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지급함
- 지자체는 유지관리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비용을 협회장에게 지급
 - 유지관리비용 지급 시 지급대상 목록 및 지원 항목별(클리닝비, 콜모니터링비 등) 지급금액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장치제작사 등은 유지관리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하며, 협회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지급
 - 장치제작사 등은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 청구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서류 제출 및 보관 의무 미적용)
 - 유지관리 비용 청구 및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은 협회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정함

다. 생계형 차량 보조금 지원

- (제출서류) 생계형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함(다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제외 가능)

○ 생계형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명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증명원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및 상시종업원이 아래 기준을 만족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자체에서 인정한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에 따른 증명원 (유효기간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준		상시종업원 기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외 업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10명 미만	5명 미만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 운수회사(법인)명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성능유지확인검사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함

- 성능유지확인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59개소)에서 진행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서 시스템(MECAR)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검사비용은 익월 10일까지 검사기관에 지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세부 위치 확인 및 예약 가능

마.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시스템을 통해 등록 관리 및 확인할 수 있음(별도 확인서 발급 없음)
- 한국환경공단, 협회, 장치제작사는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절차에 따른 진행 과정에서 장치 제작사 등의 차량 확인 후 부착불가확인 대상 차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협회는 시스템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 추가할 수 있음

부착불가확인 대상 차량 기준

◇ 부착 공간 부족 등 구조적 문제의 차량과 위험물 운반 차량

※ 렉커차, 고소작업차, 압착진개차, 청소차, 크레인, 덤프, 살수차, 캠핑카, 활어운반차, 이동목욕차, 탱크로리, 왕겨운반차, 4륜구동 등
단, 차량 하부부식, 출력 저하 및 매연 과다 등 차량 관리 소홀 및 임의(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제외

바.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사후관리 이행약정서

- ☐ 장치제작사 및 사업자는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사후관리 이행약정서를 보조금 청구시 지자체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된 보험회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며, 이행약정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제2호 및 정관에 따라 협회에서 발행된 약정서(협회와 장치제작사간 약정)를 제출하여야 함

6. 보급물량, 신규인증 장치(엔진 포함) 관리

가. 장치제작사 및 사업자별 보급물량

- (보급물량 관리)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는 장치제작사 및 사업자로부터 관할 지역 내 부착물량 등을 포함한 연간 보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단계별 모니터링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급물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사후관리 실태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실태 결과에 따라 보급물량의 제한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협회는 장치제작사 및 사업자의 보급물량 한도를 관리할 수 있음
 - ※ 협회는 장치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보급물량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이 가능하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로 제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장치제작사 및 사업자의 보급 능력 및 사후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정한 보급물량의 50% 범위 이내(관할 지자체 보급계획 물량 비율 기준 적용)에서 그 물량을 가감할 수 있음
 - 장치제작사 및 사업자가 보급물량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보급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협회는 장치제작사 등의 월간 보급물량 및 현황(적정장치 안내, 장치부착 정보 등)을 익월 10일 이내에 지자체 및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협회는 당해연도 예산 규모, 저감사업 실적 등을 감안하여 월별 보급물량 한도 상향을 환경부에 요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제작사 및 사업자 준수사항) 장치제작사 및 사업자는 대기법 등 관련 규정과 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저공해 조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급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
 - 위반 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는 해당 제작사 및 사업자의 보급물량 제한 또는 중단 및 기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나. 신규인증 장치

- (사업계획 제출) 지자체는 신규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 및 신규로 참여한 사업자에게 사업참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시점) 신규 인증 장치는 50대 이상 장치 부착 및 성능 확인 후에 보조금 지급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외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한 신규 보급 장치 및 엔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 현장 확인 후에 보조금 지급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성능유지여부 확인) 신규 인증장치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의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장치제작사별로 보급물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단계별 모니터링 방법 및 판단기준은 「배출가스저감장치 3차 모니터링 추진 계획(교통환경연구소-1578, '14.4.22)」에 따름
 - ※ 자연소형('22년 추가)의 경우 모니터링 시 온도조건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결함장치로 간주
 - 단계별 적합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1단계에서부터 재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보급물량을 제한하거나 보급중단을 조치할 수 있음

< 배출가스저감장치 단계별 모니터링 절차 및 보급물량 한도 >

구 분		신규 인증시	단계별 모니터링 적합판정시		
			1단계 ¹⁾	2단계 ²⁾	3단계 ³⁾
DPF	복합소형	총 300대	100대/월	200대/월	300대/월
	자연소형				
	기타				
		필요시 보급물량 한도 별도 설정			
p-DPF		"			

1. 신규 인증 후 장치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적합여부를 심사받아 보급하는 물량
2. 신규 인증 후부터 1단계까지 보급한 물량에 대해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과 협회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술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보급하는 물량
3. 신규 인증 후부터 2단계까지 보급한 물량에 대해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과 협회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술위원회의 적합여부 심의를 거쳐 보급하는 물량

7. 저감장치 탈거

가. 보조금 회수

- 지자체는 아래의 경우 장치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에 따른 성능유지확인 검사에서 최종(3차) 부적합된 경우 지자체는 해당 장치제작사에게 저감장치 탈거를 명령하고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함(보조금을 회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가능)
 - 의무운행 기간(튜닝점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 **(보조금 회수기준)**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지자체는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 지자체는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Tier3 이상)·개조를 한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서 정한 기간(2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엔진교체·개조한 건설기계*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간(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은 Tier3 1년, Tier4 5년)** 동안 무상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함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탈거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노선변경 등 장치부착 조건 변경, 사고(교통사고* 포함), 도난 및 천재지변, 저감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
 - *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확인
 - ※ 해당 사항은 지자체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또는 동 지침의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등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당시 장치 보증기간 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적용함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사용
 -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과 장치제작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음
 - 다만, 상계는 저감장치 부착 후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에 한함
- **(사업관리 모니터링)** 환경부장관은 관할환경청 또는 협회를 통해 분기별 사업관리 모니터링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보고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지자체 등에 요구 가능
- **(인프라 신고제)**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작사(개조·교체 사업자 포함)는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매년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대상)** 부착(개조·교체 포함) 공업사, 클리닝 센터, A/S 센터(제작사 자체 운영 포함)
 - **(신고 항목)** 사업자 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기술 인력(상담 인력 포함) 성명, 월간 최대 가능 물량(부착 또는 개조·교체, 클리닝, A/S 대수), 기타 환경부 요구항목 등
 - **(신고 방법)** 지침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로 신고(시스템 또는 공문 제출)하되, 신고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신규로 발생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나. 탈거승인

- **(장치 탈거승인)** 지자체는 저공해조치 후 의무운행기간을 경과한 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후 탈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탈거장치는 반납(금전납부 포함) 처리하여야 함
 - 운행조건, 용도 등 변경으로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 장치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장치제작사의 A/S 불가사유 등 확인)
 - 장치 도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장치반납 제외)

8.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 **(관리실태 점검)** 지자체 보조금 교부 등을 관할하는 관할환경청장 및 지자체는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의 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를 점검
 - 협회가 조사한 콜모니터링 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제가 있는 장치는 저감장치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협회를 통하여 점검하도록 조치
 - 소형 p-DPF 장치 등 매연 부적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 위주로 점검하고 부적합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 등 조치
- ☐ **(분쟁 조정)** 환경부장관은 저공해 조치 후 발생하는 품질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쟁조정협의체(가칭)를 운영할 수 있음
 - 저공해조치를 한 소유자가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자체나 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요청할 수 있음
 - 협의체의 사무국은 협회로 하며,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에서 환경부장관을 승인을 받아 정함
 - 분쟁 조정을 요청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함
- ☐ **(품질관리 및 사업이행 능력 평가)** 환경부장관은 연1회(매년 12월)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등급에 따라 보급물량을 감축하거나 중단 조치할 수 있음
 - 평가 항목 및 등급 판정과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4에 따르며, 협회는 평가 결과 취합 및 평가위원회 운영을 함

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 ☐ **(집행실적 제출)** 지자체는 매월 말일 기준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익월 5일까지 관할환경청장에게 제출
 -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 제출

- (유지관리비용 실적 제출) 협회는 유지관리실적을 지자체 등에게 제출하고, 지자체는 2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정산하여 관할환경청장에게 제출
- 협회는 유지관리비용(클리닝) 집행실적을 매 분기마다 관할 환경청장 및 지자체에게 제출하고, 당해연도(‘25년 부착분부터 적용) 지급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차년도 1월 이내에 지자체에게 유지관리비용 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24년도 부착분까지는 종전대로 무상유지관리기간 3년 이후 일괄 정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반납되거나 지자체가 탈거 승인 또는 명령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까지 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정산

- (정산) 지자체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관할환경청장에게 제출(별지 제4·5호 서식 준용)
-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및 유지관리비용 정산기준 >

사안별	장치 부착 보조금 (장치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	유지관리비용		성능유지확인 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협회		
		클리닝 및 요소수	쿨모니터링	
① 인증조건 부적합 ¹⁾	전액 회수	전액 회수	전액 회수	전액 회수
② 탈거명령 ²⁾ 및 탈거승인 ²⁾	전액 회수	탈거 및 폐차 시점을 기준으로 미집행 금액만 회수	보증기준 3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회수	미 회수
③ 수출·폐차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의무운행기간 2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회수			

1. "인증조건 부적합"이란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제원(년식, 배기량 등)이 인증서상 부착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에 부착한 경우임
 2. "탈거명령 및 탈거승인"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점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성능유지확인 등을 통해 보증기간 동안 그 성능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탈거명령한 경우 및 장치 제작사가 탈거를 요청하여 승인한 경우임
- ☞ 쿨모니터링의 사용기간별 회수기준은 쿨모니터링 비용 정산(회수) 세부 기준표 (붙임 1)를 기준으로 함

< 붙임 1 >

콜모니터링 비용 정산(회수) 세부 기준표

- ☐ 적용기간 : 튜닝(구조변경) 완료일 ~ 탈거 승인일
- ☐ 사용기간별 회수금액

장치 사용기간	회수금액(천원)	비 고
최 초 ~ 12개월	8	-
13개월 ~ 24개월	4	
25개월 ~ 36개월	-	

※ 적용기간 산정시 (탈거 승인일 - 튜닝(구조변경) 완료일)/30로 계산하고 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함

※ ‘튜닝(구조변경) 완료일’은 부착·개조 튜닝(구조변경)검사 완료일이며, ‘탈거 승인일’은 지자체에게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일로 함

[회수금액 산출근거]

- 콜모니터링 비용(12천원) = 콜 단가 및 일반관리비(2천원) × 6회(3년)

사용기간	최초~12개월	13개월~24개월	25개월~36개월	비 고
사용금액	4천 원	8천 원	12천 원	
회수금액	8천 원	4천 원	-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사업명			' 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내역	구분		합계	조기 폐차	운행차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운행 제한 카메라
					DPF	PM· NOx 저감	전동화 개조	건설 기계 DPF	건설 기계 엔진 교체· 개조	건설 기계 전동화 등	
	'25 목표	금액									
		물량									
	금회 신청	금액									
		물량									
신청 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관할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 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 형식	
배 기 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2) 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엔진 오일소모량	ℓ / 1,000km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장치 현황

3) 장치구분 (인증번호)	()	4) 장치종류		제품(일련) 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튜닝(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 ~ 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 ~ 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튜닝(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저감장치 보증기간) 면제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예산 한도내)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교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소유자 인수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작사 인수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작사 인수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소유자 인수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소유자 인수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제작사,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차량 내부 부착)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_____ (인), 연락처()

확인자⁵⁾(장착장) :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연락처()

책임자⁶⁾(제작사) : (직위) _____ (성명) _____, 연락처()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¹⁾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²⁾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³⁾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⁴⁾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⁵⁾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⁶⁾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별지 제2호의2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 · 개조 확인서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소유자		건설기계명		형식	
등록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또는 전동기 형식	
규격		차대번호		주행시간	(hr, km)

☐ **엔진교체·개조 현황**

형식		배출허용기준	Tier 3 () Tier 4 () LPG 가스 () 천연가스 () 전기 () 수소전기 ()	제품(일련)번호	
엔진(또는 모터)제조사		교체 · 개조 공업사		튜닝(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교체·개조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후 2년 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금전반납 등) 의무가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공해조치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 엔진교체·개조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必) - 소유자 인수
- 엔진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 엔진교체·개조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전후점검표 -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건설기계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확인자 교체공업사¹⁾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책임자 교체사업자²⁾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작성 시 유의사항

1. ¹⁾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²⁾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교체사업자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장치부착 (엔진교체·개조)일	년 월 일
20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장(도지사) 귀하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개조사업자)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소유자와의 관계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월) (보고기관 : 00000)												
1 저감장치등 보급실적 (단위 : 대)												
구분				총계		1월		2월		...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운행차 저공해 조치	계											
	DPF	소계										
		자연대형										
		자연중형										
		자연 소형	RV, 승합									
			화물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 소형	RV, 승합									
	화물											
PM·NOx 저감장치												
전동화 개조												
노후차 폐차 및 노후건설 기계 폐기	계											
	5등급	소계										
		RV, 소형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4등급	소계										
		RV, 소형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건설기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DPF	소계										
		복합대형										
		복합중형										
	엔진 교체·개조	지게차	소계									
			2톤									
			4톤									
			6톤									
			14톤									
			20톤									
			30톤									
		굴착기	5톤									
			14톤									
	전동화 개조	지게차	소계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인산철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항타항발기												

2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보조 금액	교부 액	집행액 누계			집행 잔액	비 고
합 계					계	1월	2월		
운행차 저공해 조치	계								
	DPF	소계							
		자연대형							
		자연중형							
		자연소형	RV, 승합						
			화물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소형	RV, 승합						
			화물						
	PM·NOx 저감장치								
	전동화 개조								
노후차 폐차 및 노후건설 기계 폐기	계								
	5등급	소계							
		RV, 소형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4등급	소계							
		RV, 소형승합							
		중 소 형 화 물							
		버스, 대형화물							
	건설기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DPF	소계							
		복합대형							
		복합중형							
	엔진 교체·개조	소계							
		지게차	2톤						
			4톤						
			6톤						
			14톤						
			20톤						
			30톤						
		굴착기	5톤						
			14톤						
	전동화 개조	소계							
		지게차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인산철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항타항발기							

3 특기사항

※ 부진사유, 향후 사업전망, 조치계획 등 별지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년 유지관리비용 집행실적

1. 유지관리비용 적립 현황

(단위 : 대, 만원)

구 분		○○ 년		비고
		대수	금액	
합 계				
클리닝 (펠릿 교체·충진)	제1종(DPF)			
콜 모니터링	소 계			
	제1종(DPF)			
	PM·NOx			
요소수 보충				

2. 유지관리비용 집행실적

(단위 : 대, 만원)

구분		○○ 년		집행잔액
		대수	금액	
합 계				
클리닝 (펠릿 교체·충진)	제1종(DPF)			
콜 모니터링	소 계			
	제1종(DPF)			
	PM·NOx			
요소수 보충				

[별지 제6호 서식]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사용본거지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복수체크 가능)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해당 엔진으로 교체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유자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점검 및 부착일자		소유자	이름	(서명)
			연락처	
공업사	(회사명)	점검결과		장착 가능, 불가(사유:)
	(직위) (담당자) (인)	차명		
제작사	(회사명)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		km
	(직위) (담당자) (인)	주행거리		

점검	항목	내용	점검내역		비고
부착전 점검	오일량	엔진오일량 확인	정상 ☐	상하 ☐	
	오일점검	엔진오일 (누유, 변색) 여부	양호 ☐	불량 ☐	
	스톨TEST	기어중립에서 브레이크누르상태에서 부하를 주었을 때 1800rpm이상이면 정상(필요시 진행)	정상 ☐	불량 ☐	
	오일소모량	엔진오일소모량(1L/1000km이내) 오일 교환 전 보충여부(보충 ☐ 미 보충 ☐)	양호 ☐	불량 ☐	
	엔진부조	엔진노킹현상 및 엔진소리	없음 ☐	불량 ☐	
	터보 (인터쿨러)	터보차저, 인터쿨러 상태 확인	양호 ☐	불량 ☐	
	EGR	EGR 정상여부 확인(EGR 오일누유점검)	양호 ☐	불량 ☐	
	블로바이 가스	엔진오일캐 을 열었을 때 흰연기가 지속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면 불량	양호 ☐	불량 ☐	
	매연	매연측정(인증 조건 범위 만족 여부)	정상 ☐	불량 ☐	
	배기관	배기매니폴더 및 배관 상태	양호 ☐	불량 ☐	
부착후 점검	매연	매연측정(10% 만족 여부)	정상 ☐	불량 ☐	
	센서위치	T1,T2,T3,압력호스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	정상 ☐	불량 ☐	
	체결불량	볼트너트 등 각 체결부위에 체결상태 확인	정상 ☐	불량 ☐	
	연료리턴라인	연료리턴라인에 연료라인 정상연결 및 누유 확인	정상 ☐	불량 ☐	
	배선처리	배선처리 확인(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게 처리하면 안됨)	정상 ☐	불량 ☐	
	배관절단	배관 파이프 절단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장착도면 참조	정상 ☐	불량 ☐	
	용접부	용접상태 및 도장을 하였는지(부식으로 소음발생)	정상 ☐	불량 ☐	
	메인커넥터	딸각소리가 나는 등 적정 체결 확인	정상 ☐	불량 ☐	
	KEY ON선	규정위치에 연결 및 배선처리 확인	정상 ☐	불량 ☐	
	KEY ON선 휴즈	KEY ON선 휴즈 및 홀더정상여부 확인	정상 ☐	불량 ☐	
	압력	배압 표출 및 정상여부 확인	정상 ☐	불량 ☐	
	운행	시운행을 해서 간섭등에 의한 소음발생여부 확인	정상 ☐	불량 ☐	
	수동재생	재생시 백연이나 LEAK(연료누설) 확인 및 정상작동여부 등 확인	정상 ☐	불량 ☐	
	자기진단	저감장치 OBD 에러 발생 여부 및 차량 자체 OBD가 적용된 차량은 자기진단기 활용하여 이상 진단 실시	정상 ☐	불량 ☐	
특이사항					

※ 오일소모량은 소유자 설문으로 보충 여부 기재(보충으로 기재한 경우 적정 소모 여부 파악)

※ 장치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작성요망, 건설기계 DPF는 제작사 담당자가 직접 점검 및 작성

[별지 제7호의2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 점검표(지게차)

점검 및 교체일자	(교체전)	(교체후)	소유자	이름 연락처	(서명)
공업사	(회사명)		건설기계명		
	(직위)	(담당자)	(인)	기종/모델	/
엔진교체 사업자	(회사명)		등록번호		
	(직위)	(담당자)	(인)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km, hr)

점검	항목	내용	점검내역		비고
교체전 점검	시동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정상□	불량□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정상□	불량□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틸팅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정상□	불량□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정상□	불량□	
	변속기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양호□	불량□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여부	양호□	불량□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양호□	불량□	
		변속상태 시동여부	양호□	불량□	
	전기장치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양호□	불량□	
	조향장치	조향시 소음 및 누유, 떨림등 발생여부	양호□	불량□	
	제동장치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불량□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정상□	불량□	
차체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양호□	불량□		
배기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양호□	불량□		
교체후 점검	시동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정상□	불량□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정상□	불량□	
	엔진오일	엔진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 여부	정상□	불량□	
	냉각수	냉각수보충 상태 및 누수여부	정상□	불량□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틸팅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정상□	불량□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정상□	불량□	
	엔진부조	공회전 편차 확인(엔진별 가이드라인 참조)	양호□	불량□	
	변속기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양호□	불량□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여부	양호□	불량□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양호□	불량□	
	전기장치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조향장치	조향시 소음 및 누유, 떨림등 발생여부	양호□	불량□	
	제동장치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불량□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정상□	불량□	
	차체	엔진교체 후 용접 불량 등	양호□	불량□	
	배기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양호□	불량□	
	기타	교체부품 간섭 확인	정상□	불량□	

특이사항 (교체 불가 여부 등을 명시)

[별지 제7호의3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 점검표(굴착기 및 로더)

점검 및 교체일자	(교체전)	(교체후)	소유자	이름	(서명)
				연락처	
공업사	(회사명)		건설기계명		
	(직위)	(담당자)	(인)	모델명/규격	/
엔진교체 사업자	(회사명)		등록번호		
	(직위)	(담당자)	(인)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km, hr)

점검	항목	내용	점검내역		비고
교체전 점검	시동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정상 ☐	불량 ☐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정상 ☐	불량 ☐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	불량 ☐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정상 ☐	불량 ☐	
		메인펌프 상태확인(필요시 압력확인)	정상 ☐	불량 ☐	
		BOOM, ARM, BUCKET 정상작동여부	정상 ☐	불량 ☐	
		스윙모터 기능정상 작동 확인	정상 ☐	불량 ☐	
	전기장치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	불량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	불량 ☐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양호 ☐	불량 ☐	
	제동장치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	불량 ☐	
	안전장치	세이프티 스위치 작동여부 확인	양호 ☐	불량 ☐	
	차체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양호 ☐	불량 ☐	
		튜닝(구조변경)으로 인한 엔진교체 공간부족	양호 ☐	불량 ☐	
교체후 점검	시동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정상 ☐	불량 ☐	
		유압계통작동 및 주행 시 시동꺼짐	정상 ☐	불량 ☐	
	엔진오일점검	엔진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 여부	정상 ☐	불량 ☐	
	냉각수	냉각수보충 상태 및 누수여부	정상 ☐	불량 ☐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	불량 ☐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및 누수	정상 ☐	불량 ☐	
		메인펌프 상태확인(필요시 압력확인)	정상 ☐	불량 ☐	
		BOOM, ARM, BUCKET 정상작동여부	정상 ☐	불량 ☐	
		스윙모터 기능정상 작동 확인	정상 ☐	불량 ☐	
	엔진부조	공회전 편차 확인(엔진별 가이드라인 참조)	양호 ☐	불량 ☐	
	전기장치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	불량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	불량 ☐	
	제동장치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	불량 ☐	
	안전장치	세이프티 스위치 작동여부 확인	정상 ☐	불량 ☐	
	차체	용접 불량 등 확인	양호 ☐	불량 ☐	
	배기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양호 ☐	불량 ☐	
	기타	소음발생 및 부품간섭여부 확인 등	정상 ☐	불량 ☐	
특이사항 (교체 불가 여부 등을 명시)					

[별지 제7호의4 서식]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 점검표(롤러)

점검 및 교체일자	(교체전)	(교체후)	소유자	이름	(서명)
				연락처	
공업사	(회사명)		건설기계명		
	(직위)	(담당자)	(인)	모델명/규격	/
엔진교체 사업자	(회사명)		등록번호		
	(직위)	(담당자)	(인)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km, hr)

점검	항목	내용	점검내역		비고
교체전 점검	시동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정상□	불량□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정상□	불량□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정상□	불량□	
		메인펌프 상태확인(필요시 압력확인)	정상□	불량□	
		디퍼 등 작업장치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BOOM, ARM 정상작동 여부	정상□	불량□	
	전기장치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양호□	불량□	
	제동장치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불량□	
	안전장치	세이프티 스위치 작동여부 확인	양호□	불량□	
	차체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양호□	불량□	
		튜닝(구조변경)으로 인한 엔진교체 공간부족	양호□	불량□	
교체후 점검	시동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정상□	불량□	
		유압계통작동 및 주행 시 시동꺼짐	정상□	불량□	
	엔진오일점검	엔진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 여부	정상□	불량□	
	냉각수	냉각수보충 상태 및 누수여부	정상□	불량□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및 누수	정상□	불량□	
		메인펌프 상태확인(필요시 압력확인)	정상□	불량□	
		디퍼 등 작업장치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BOOM, ARM 정상작동 여부	정상□	불량□	
	엔진부조	공회전 편차 확인(엔진별 가이드라인 참조)	양호□	불량□	
	전기장치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제동장치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불량□	
	안전장치	세이프티 스위치 작동여부 확인	정상□	불량□	
	차체	용접 불량 등 확인	양호□	불량□	
	배기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양호□	불량□	
	기타	소음발생 및 부품간섭여부 확인 등	정상□	불량□	
특이사항 (교체 불가 여부 등을 명시)					

[별지 제7호의5 서식]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지게차)

점검 및 교체일자	(교체전)	(교체후)	소유자	이름 연락처	(서명)
공업사	(회사명)		건설기계명		
	(직위)	(담당자)	(인)	기종/모델	/
사업자	(회사명)		등록번호		
	(직위)	(담당자)	(인)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km, hr)

점검	항목	내용	점검내역		비고
교체·개조 전 점검	시동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정상□	불량□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정상□	불량□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틸팅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정상□	불량□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정상□	불량□	
	변속기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양호□	불량□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여부	양호□	불량□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양호□	불량□	
		변속상태 시동여부	양호□	불량□	
	전기장치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양호□	불량□	
	조향장치	조향시 소음 및 누유, 떨림등 발생여부	양호□	불량□	
	제동장치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불량□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정상□	불량□	
	차체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양호□	불량□	
	배기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양호□	불량□	
교체·개조 후 점검	전동기	전원 정상 작동 상태 및 소음발생 여부	정상□	불량□	
	축전지	충방전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외형 변형 또는 파손 등 훼손여부	정상□	불량□	
		접지, 안정기, 충전 상태 정상여부	양호□	불량□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틸팅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정상□	불량□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정상□	불량□	
	BMS	BMS 정상 작동 여부 등	양호□	불량□	
	변속기(또는 감속기)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양호□	불량□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여부	양호□	불량□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양호□	불량□	
	전기장치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조향장치	조향시 소음 및 누유, 진동 등 발생여부	양호□	불량□	
	제동장치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불량□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정상□	불량□	
	차체	교체·개조에 따른 용접 불량 등	양호□	불량□	
	기타	교체부품 간섭 확인	정상□	불량□	

특이사항 (교체·개조 불가 여부 등을 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엔진교체·개조(전동화 개조 포함),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시·도지사 귀중

< 별첨 2 >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 DPF 관리 유의사항 안내 -

-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백연 발생 방지)
-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보증기간 이후에는 지자체별 예산 범위내에서 클리닝 비용 지원
 -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 저감장치와 관련 부품의 불법적인 조작, 훼손, 탈거 금지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 공회전 제한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준수 및 주정차시 배기관 주변 화재 위험이 있으니 확인 필요 : 배기관 주변에 쉽게 연소되는 물체(마른 낙엽, 지푸라기, 종이, 타이어 등)나 인화성 물질(기름 및 오일 등)이 있으면 주정차하지 마시고, 차량 뒷면과 벽 사이 충분한 거리 두기

<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

1. (부착 방법)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크래쉬패드(자기진단장치 근처 계기판 상단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2. (규격 크기) 높이는 70mm로 하며, 길이는 100mm로 함
- ※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별첨 3 >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 건설기계 엔진교체 유의사항 안내 -

- 정기적인 건설기계 **정비와 제작사 관리 매뉴얼 준수**
- 급출발 및 급가속 등 작업 안전에 우려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건설기계 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준수**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불법적인 조작, 훼손, 탈거 금지**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

1. (부착 방법)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계기판 근처에 부착하여야 함
 2. (규격 크기) 높이는 50mm로 하며, 길이는 100mm로 함
- ※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별첨 4 >

제작사 품질관리 및 사업이행 능력 평가 방법

□ 평가 항목 및 등급 분류

- 아래 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를 실시하며, 합산 점수에 따른 등급(1등급~4등급*)을 분류하여 보급물량 한도 차등 적용

* 1등급 : 90점 이상, 2등급 : 80점 이상~90점 미만, 3등급 : 70점 이상~80점 미만, 4등급 : 70점 미만

< 항목별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정량 평가 (80점)	저감사업 이행 평가(45점)	45
	① 성능유지확인 최초 부적합률	10
	② 인증조건 부적합에 따른 저감장치 탈거 건수	5
	③ 지자체 보조금 지급 반려 건수(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및 계약서 미 작성에 따른 반려 여부 등)	5
	④ 유지관리 이행률(대상 대수 대비)	20
	⑤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적정평가(청구건수 대비)	5
	소유자 불만 관리 평가(20점)	15
	① 소유자 불만 접수율(콜 모니터링 센터)	5
	② 콜 모니터링 조치율(불만 접수 후 조치)	5
	③ 소비자 만족도(클리닝)	5
	환경부 및 지자체 평가(20점)	20
	① 제작사 조치율(민원제기 건수 대비)	10
	② 환경부·지자체 등 수시(지도)점검 결과 및 관련 법령, 지침 등 준수여부	10
정성 평가 (20점)	환경부 및 지자체 평가(10점)	10
	① 환경부·지자체 담당자 평가	10
	신인도 평가(10점)	10
	① 사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	5
	② 장치의 기술적 신뢰도 평가	5
계		100

※ 배점에 대한 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합산 점수의 소수점 점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적용

□ 등급별 보급물량 한도 관리

- (1등급) 보조금 지침에 따라 부여된 물량 한도 유지하되,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물량 한도에서 20%를 증가하여 적용
- (2등급 ~ 4등급) 2등급은 한도유지, 3등급은 20% 차감, 4등급은 40% 차감, 4등급을 연속 3회 이상 받은 제작사는 사업 중단(1~3년)

< 보조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제출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

-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재)산정 연구용역을 필요시 수행
 - 제작사는 원가 및 적정 보조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필요한 원가 산정 근거자료 제출
 - 보조금 원가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고의 및 허위(가공, 위조 등)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에서 배제 조치
- *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재무제표 일체, 기타 용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 ※ 사업참여 배제와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 부과
- 원가 산정 근거자료 중 일부 자료가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1년간(당해연도 포함) 보급물량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 (40% 한도 차감)

* 2회 연속 착오 제출 :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사업중단(1~3년) 3회 연속 착오 제출 : 사업참여 영구 배제

< 제작사 평가 세부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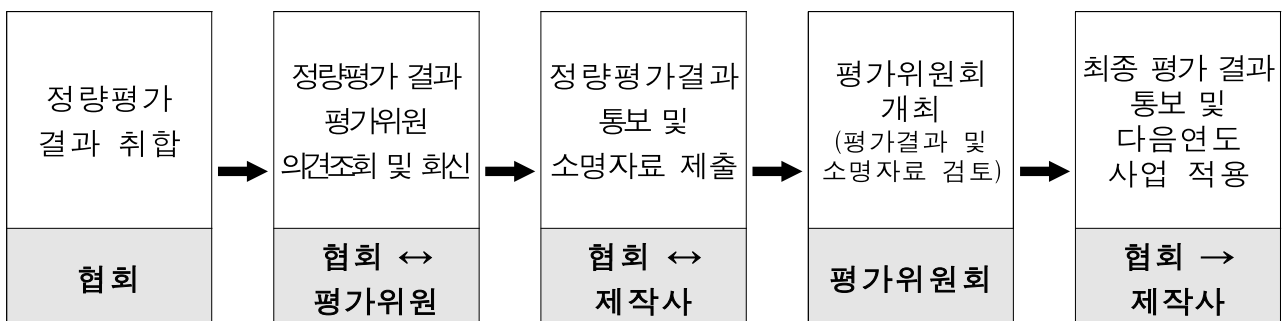
□ 평가 방법

-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다음연도 1~2월
- 평가자료 : 전년도 12월~당해 연도 11월 자료
- 적용시기 : 차년도 보조사업 진행 시(단, 1~2월 평가인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진행 시)
- 운영방법 :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방법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평균 점수

□ 평가 위원회 운영(안)

- 역할 및 기능
 - 평가 기초 자료 검토 및 평가
 - 평가 결과 및 제작사 제출 소명 자료 등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등급 결정 등
- 위원회 구성
 - 환경부(1), 환경청(1), 지자체(수도권 1명 이상, 수도권 외 1명 이상),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4인 이상
 - ※ 공무원 외 민간위원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위원장은 평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선정

□ 평가 진행 절차



* 필요 시 추가 평가위원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위원회 결과를 최종 적용

** 정량적 평가 결과와 별개로 위원회는 제작사의 부정행위(허위납품, 미인증 제품 부착 등)가 확인되었을 경우 배정물량 제한·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세부 평가 기준

○ 정량 평가(80점)

- 저감사업 이행 평가(45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 방법								
성능유지 확인 최초 부적합률 (10점)	<table><tr><th>배점 기준</th><th>5% 미만</th><th>5% 이상~ 7% 미만</th><th>7% 이상~ 10% 미만</th></tr><tr><td>점수</td><td>10</td><td>5</td><td>3</td></tr></table>				배점 기준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10% 미만	점수	10	5	3	○ 장치 종류별 성능유지확인검사 부적합률 산출·평가 - (기준자료) MECAR 전산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자료 - (확인방법) 최초 검사 결과(장치 종류별 평균값 적용)에 따른 부적합률 확인 * 단, 관능검사 부적합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 - (평가산식) 최초 검사 기준 부적합 대수 ÷ 최초 검사 대수
배점 기준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10% 미만										
점수	10	5	3										
인증조건 부적합에 따른 저감장치 탈거건수 (5점)	<table><tr><th>배점 기준</th><th>0건</th><th>1건~4건</th><th>5건 이상</th></tr><tr><td>점수</td><td>5</td><td>3</td><td>1</td></tr></table>				배점 기준	0건	1건~4건	5건 이상	점수	5	3	1	○ 장치 종류별 부착 대수 대비 탈거 건수 평가 - (기준자료) MECAR 전산 장치탈거 현황 자료 - (확인방법) 인증조건 부적합으로 인한 탈거한 장치 현황 건수 적용
배점 기준	0건	1건~4건	5건 이상										
점수	5	3	1										
지자체 보조금 지급 반려 건수 (5점)	<table><tr><th>배점 기준</th><th>0건</th><th>1건~4건</th><th>5건 이상</th></tr><tr><td>점수</td><td>5</td><td>3</td><td>1</td></tr></table>				배점 기준	0건	1건~4건	5건 이상	점수	5	3	1	○ 부착대수 대비 보조금 지급 반려 건수 평가 - (기준자료) MECAR 전산 상 보조금 반려된 제작사가 지자체로 제출한 보조금 청구 자료 등 - (확인방법) 지침상 정해진 필수 서류제출* 미비로 반려된 건수 적용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확인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계약서 등
배점 기준	0건	1건~4건	5건 이상										
점수	5	3	1										
유지 관리 이행률 (20점)	* 보증기간 이내(10점) <table><tr><th>배점 기준</th><th>95% 이상</th><th>95% 미만~ 90% 이상</th><th>90% 미만~ 85% 이상</th></tr><tr><td>점수</td><td>10</td><td>5</td><td>3</td></tr></table> * 보증기간 경과(10점)				배점 기준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점수	10	5	3	○ 평가기준 기간의 누적 클리닝 실시율 산출·평가 - (기준자료) MECAR 전산 상 클리닝 비용 지급 자료 - (확인방법) 클리닝 대상 차량 대비 실시율 확인 * (보증기간 3년 이내) 전체 누적 대수 기준
배점 기준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점수	10	5	3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 방법
	배점 기준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 (보증기간 경과) 계획된 클리닝 예산 집행 기준 - (평가산식) 평가기간 누적 클리닝 대수 ÷ 클리닝 대상 대수
	점수	10	5	3	
	* 합산(20점) 적용				
유지관리 비용 청구서 적정 평가 (5점)	배점 기준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 청구서류 반송률 산출·평가 - (기준자료) MECAR 전산 상 클리닝 비용 청구 자료 - (확인방법) 작성 오류, 누락, 보완 요청 등 미비 사항 * 보증기간 이내·이후 모두 통합 적용 - (평가산식) 반송 대수 ÷ 청구 대수
	점수	5	3	1	

- 소유자 불만 관리 평가(15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 방법
소유자 불만 접수율 (5점)	배점 기준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 콜모니터링 시 불만 접수 비율 산출·평가 - (기준자료) 저감사업 콜센터 콜모니터링 자료 - (확인방법 및 평가산식) 불만 접수건수÷콜모니터링 성공건수(협회)
	점수	5	3	1	
콜 모니터링 조치율 (5점)	배점 기준	100%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 불만 접수건수 대비 조치 비율 산출·평가 - (기준자료) 저감사업 콜센터 콜모니터링 자료 - (확인방법 및 평가산식) 불만 조치건수÷불만 접수 건수(협회) ※ 조치 요청일부터 7일(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된 경우 조치한 것으로 인정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의 범위 내 연장 가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준용)
	점수	5	3	1	
소비자 만족도 (5점)	배점 기준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 제작사별 클리닝 만족도 조사 - (기준자료) 콜센터 콜모니터링 자료 - (평가산식) 클리닝 만족·보통 건수 ÷ 통화 성공건수(협회)
	점수	5	3	1	

- 환경부 및 지자체 평가(20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 방법
제작사 조치율 (10점)	배점 기준	100%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 민원 제기건수 대비 제작사 조치율 산출·평가 - (기준자료) 환경부 및 지자체로 제기된 민원 제기 내역 - (확인방법 및 평가산식) 조치완료 건수÷민원 제기건수(환경부, 지자체)
	점수	10	5	3	
환경부·지 자체 등 수시점검 결과 (10점)	배점 기준	1% 미만	1%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 수시점검 대상 차량 대비 부적합률 산출·평가 - (기준자료) 정부 및 지자체 수시점검 결과 보고서(MECAR 전산 등 확인) - (확인방법 및 평가산식) 매연 및 온도·배압 부적합 등 시정요구대상 건수÷수시 점검 건수
	점수	10	5	3	

○ 정성 평가(20점)

- 환경부 및 지자체 평가(10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 방법
사업 협조도 (10점)	배점 기준	상	중	하	○ 환경부·지자체에 대한 업무 협조도 평가 - (기준자료) 저감사업 담당자의 협조도 및 민원대응에 대한 평가 결과 - (확인방법) 업무 협조도 및 민원대응에 따른 등급 평가(환경부, 지자체) * 전국 시·도 평가자료의 전체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환경부 가감(±2) 가능)
	점수	9~10	5~6	1~2	

- 신인도 평가(10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가 방법
사업의 지속가능 성 평가 (5점)	배점 기준	상	중	하	○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 (기준자료) 제작사에서 제출한 저감사업 운영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개선방안 등 ※ 공업사 관리, 저감장치 품질관리, 클리닝, A/S 체계 등 - (확인방법) 제작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점수	4~5	2~3	1	
장치의 기술적 신뢰도 평가 (5점)	배점 기준	상	중	하	○ 장치의 기술적 신뢰도에 대한 평가 - (기준자료) 제작사에서 제출한 기술 신뢰도 향상 현황 및 향후 계획, 개선방안 등 - (확인방법) 제작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점수	4~5	2~3	1	

< 별첨 5 >

○○시공고 제20○○-○○○호

20○○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

○○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년 ○월 ○○일

○○○○○○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 ○○월 ~ ○○월(또는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원예산 : ○○○○천원(○○○대)
 -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일부 변동가능
- 지원내역 :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지원
 - 자부담금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자부담금 면제대상 차량은 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PM·NOx 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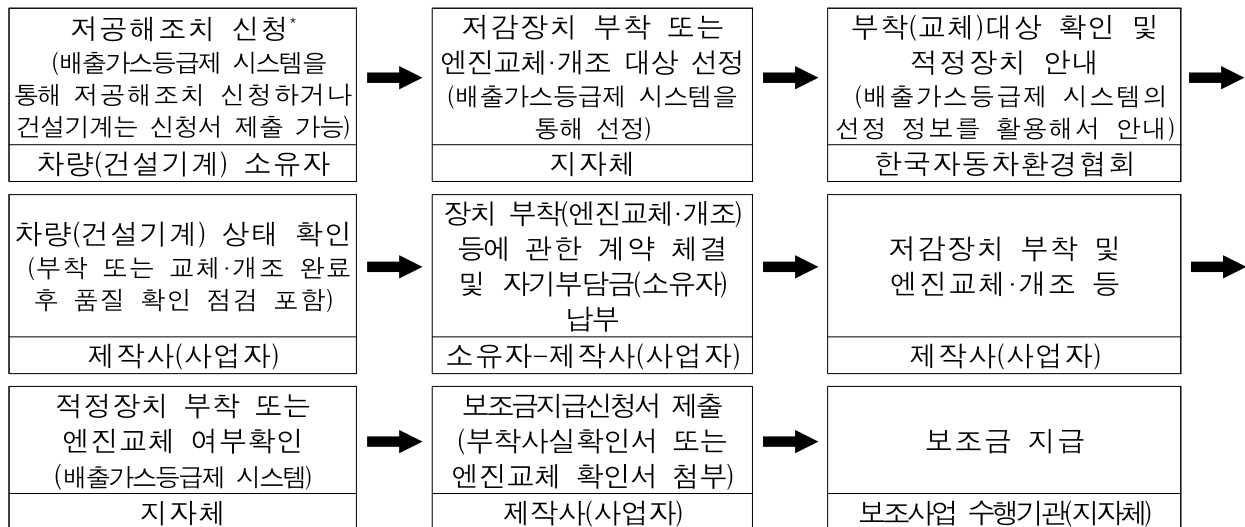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9,371	9,271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834	13,704	130	2,262
복합재생 대형 (출력제한)	14,958	14,828	130	2,262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야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절차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
(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3. 문의처

- ○○시 ○○○과(☎000-000-0000)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저감장치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제작사는 변동될 수 있음)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소형	중형	대형	PM-NOx	소형	중형	대형	PM-NOx
1	세라کم	02-744-1777	○	○	○	-	-	-	-	○
2	HK-MnS	1588-7657	○	○	○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	○	○	○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	○	○	-	-	-	○	○
5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39	○	○	○	-	-	○	○	○
6	크린어스	1577-9014	○	○	○	○	-	-	-	○
7	화이버텍	1588-7617	○	○	-	-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	-	-	-

4. 기타 사항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부착 신청 필요

*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제외

< 별첨 6 >

○○시 공고 제20○○-○○○호

20○○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공고

○○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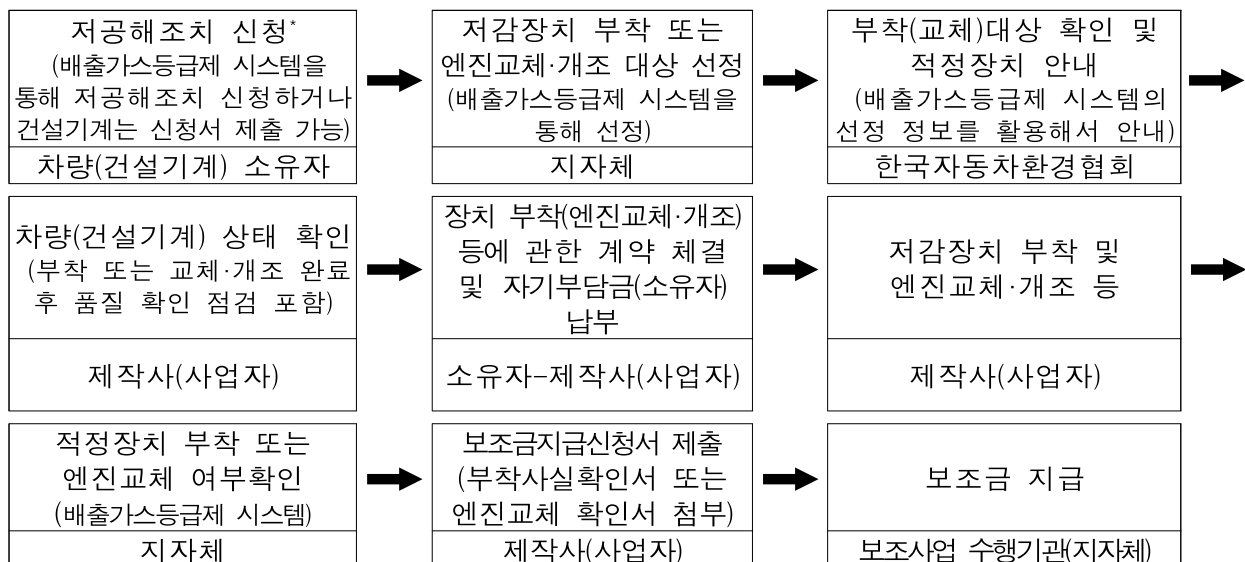
○○○○○○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 ○○월 ~ ○○월(또는 예산소진시 까지)’
 - ※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는 00월00일부터 진행하며, 00월00일 대상 선정 예정
- 지원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 지원물량 : ○○○대
-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2. 사업절차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절차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았거나,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경우 사업절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시로 제출

3. 교체사업자별 연락처(최종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No	제 작 사	연 락 처	지 게 차								굴 착 기		로 더		롤 러
			2톤			4톤		6톤		5톤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LPG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1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	○	-	○	-	○	○	○	-	-	-	
2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	○	-	-	-	○	-	○	-	-	-	-	
3	크린어스	1577-9014	-	○	○	-	○	-	○	○	○	○	○	-	
4	HK-Mns	070-4267-2736	-	○	○	-	○	-	○	○	○	-	-	-	
5	에코앤드림	1644-0879	-	○	○	-	○	-	○	○	○	○	-	○	
6	세라컴	1644-5232	-	○	○	-	○	-	○	○	○	-	-	-	
7	일진하이솔루스	031-220-0863	○	○	-	-	○	-	○	○	-	-	-	-	
8	디엔지비	031-355-4900	○	-	-	-	-	-	-	-	-	-	-	-	

4. 기타 참고사항

- 엔진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 회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엔진교체를 완료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신청자(차주)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세무부서 등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기타 문의는 ○○○○○○○○○과(Tel.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7 >

○○시 공고 제20○○-○○○호

20○○년도 건설기계 DPF 사업공고

○○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년 ○월 ○○일

○○○○○○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건설기계 DPF 부착 시 장치 부착 비용지원

○ 사업기간 : ‘20○○. ○○월 ~ ○○월

※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는 00월00일부터 진행하며, 00월00일 대상 선정 예정

○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
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믹서
및 펌프는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 지원물량 : ○○○대

○ 지원내역 : 건설기계 DPF 부착비용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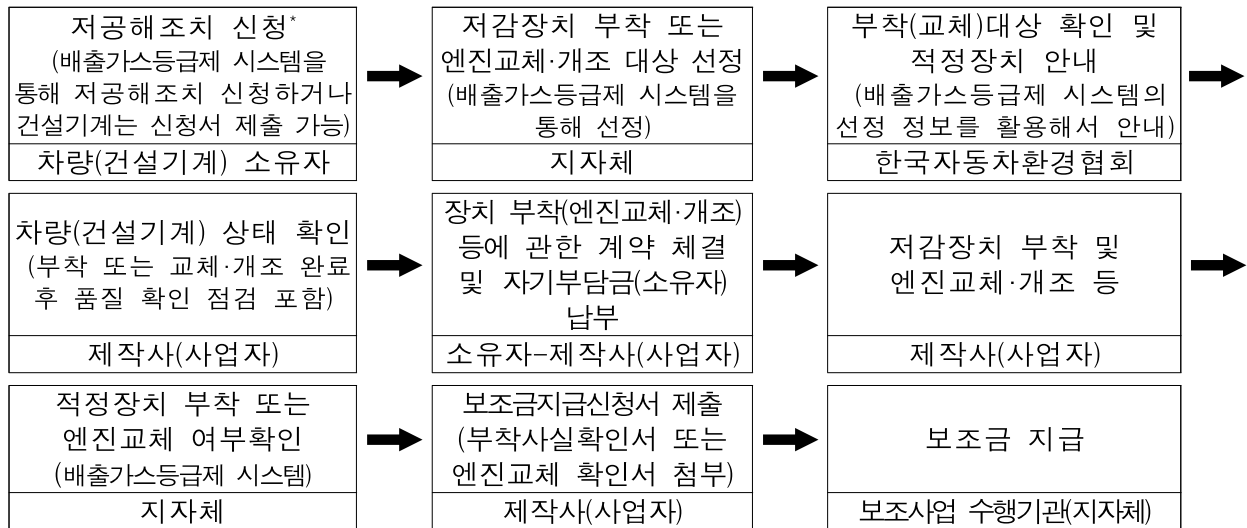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7,101	462
중형	-	-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사업절차

< 건설기계 DPF 부착 절차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았거나,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경우 사업절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참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를 ○○시로 제출

3. 제작사별 연락처

- 일진하이솔루스(031-220-0863, 0839), 세라컴(02-744-1777, 1644-5232), HK-Mns(070-4277-2731)

4. 기타 참고사항

- 건설기계 DPF 부착차량의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건설기계 DPF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 (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건설기계 DPF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 대상자 선정 기타 문의는 ○○○○○○○○과(Tel.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8 >

○○시 공고 제20○○-○○○호

20○○년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공고

○○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저감을 통한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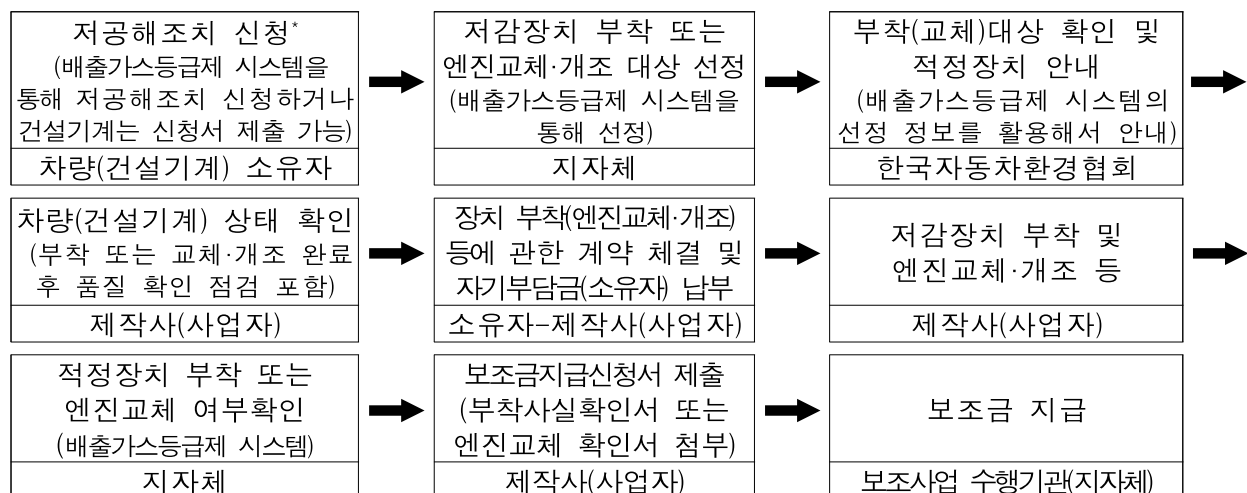
○○○○○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건설기계를 전기 건설기계로 개조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 ○○월 ~ ○○월(또는 예산소진시 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는 00월00일부터 진행하며, 00월00일 대상 선정 예정
- 지원대상 : 대국민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
- 지원물량 : ○○○대
- 지원내역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비용 전액 지원

2. 사업절차

< 전동화 개조 절차 >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제출

3. 사업자별 연락처(사업자 및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경유 지게차 전동화(2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에코앤드림(1644-0879)

4. 기타 참고사항

- 전동화 개조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전동화 개조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전동화 개조를 완료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신청자(차주)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세무부서 등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등 기타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Tel.1544-0907) / ○○○○○○○과(Tel.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모니터링 운영 협약서

본 사업자는 2025년도 보조금 지침에 따라 전동화 개조에 따른
원격 모니터링(충방전 중 SOC, 전압, 전류, 온도, 과충전/과방전
등 각종 에러, 감지 시 사용자에게 알림 서비스[문자 등] 제공하는
기능 구성) 운영을 확약하며,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환경부의 조
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귀 부에 본 운영 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유 의

사업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1.1.12 제정, ‘21.7.13 시행)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주요 제재 규정을 안내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